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권 경 숙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201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안 사 라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

권 경 숙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안 사 라

인 준 서

안사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는 만 1세에서 만 5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양육태도가 어머니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어떠한가?
2.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떠한가?
3.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1세에서 만5세 자녀를 둔 어머니 2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2년 1월 13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연구를 승낙한 교육기관의 어머니들에게 4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총 296부를 회수하였으며 문항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검사지 26부를 제외한 270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연구도구는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1993년 Hart와 Zeider가 개발한 문항을 기초로 하여 1998년 이소라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아동, 부모, 교사의 인식’에서 이용한 검사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Schaefer의 MBRI를 이원영

(1983)이 번안하여 사용하고 표옥자(1996), 최은경(2009)등이 재구성하여 만든 검사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 사후검증으로 *Duncan*의 다중비교검증,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1세에서 만 5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아동권리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권리의 하위 유형 중 생존권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발달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권에 대한 인식은 어머니의 연령이 많을수록 높았으며 생존권에 대한 인식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가정소득, 자녀의 성별,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율적 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제적 태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연령이 30세 이하일 경우 가장 높은 자율적 태도를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 경우 자율적이며 애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 경우 통제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높은 애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높은 통제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소득이 높을 경우 애정적이며 자율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통제적이고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의 성별이나 연령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권리 전체와 자율적 태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통제적 태도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의 영향을 살펴보면 보호권과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거부적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달권과 참여권은 자율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적 태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주었고 참여권 또한 통제적 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문제	5
3. 용어의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7
1. 아동권리	7
1) 아동권리의 개념	7
2) 아동권리의 발전 과정	9
3) 유엔 아동권리협약	13
4) 선행연구 고찰	18
2. 양육태도	20
1) 양육태도의 개념과 중요성	20
2) 양육태도의 유형	22
3)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5
III. 연구방법	29
1. 연구 대상	29
2. 연구 도구	31
3. 연구 절차	34

4. 자료 분석	35
IV. 결과 및 해석	37
1.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37
1)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37
2) 어머니의 배경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40
2. 어머니의 양육태도	44
1) 어머니의 양육태도	44
2) 어머니의 배경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44
3.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52
1)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	52
2) 아동권리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53
V. 논의 및 결론	57
1. 논의	57
2. 결론 및 제언	63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1> 제네바 선언	11
<표 2> 유엔 아동권리 선언 10조항	12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30
<표 4> 아동권리의 유형별 문항내용	32
<표 5> 아동권리 검사지의 하위 유형별 문항 번호 및 신뢰도	33
<표 6> 양육태도 검사지의 하위 유형별 문항 번호 및 신뢰도	34
<표 7>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38
<표 8>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39
<표 9>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41
<표 10>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43
<표 11> 어머니의 양육태도	44
<표 12>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46
<표 13>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48
<표 14>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49
<표 15> 가정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51
<표 16>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	53
<표 17>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애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	54
<표 18>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자율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	55
<표 19>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통제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	5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아동 폭력이나 아동 학대, 영아 유기 등에 관련된 기사를 너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사를 접했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동보호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동들이 단지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 아동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즉,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아동관의 영향이 남아 있고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신지현, 2004)에 아동학대, 아동유기, 방임 등과 같이 아동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948년 유엔위원회는 인권을 ‘사회적인 성취에서 인종, 성별, 언어, 종교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특권과 책임이 주어지는 기회’라고 규정하였다. 권리란 인간으로서 생활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권리를 갖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아동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예외 시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과거 아동은 불완전하고 미성숙한 존재이며 성인의 보호가 필요한 의존적이고 소극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왔으며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단순히 성인의 소유물로 생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문화를 하나의 가치 규범으로 인식하여 장유유서(長幼有序)와 효(孝)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생각하였고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동이 성인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를 표현하는 것은 버릇없는 행동으로 인식하였다. 그래서 아동의 표

현을 억압하거나 아동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일삼기도 하였다.

제 1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는 아동들이 생기면서 사회는 점차 아동을 보호해야함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아동보호나 아동구제 차원에서 아동권리선언을 기초로 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사회가 점점 아동권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비해 아동에 대한 관점이 변화되기 시작했지만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했을 뿐 아동을 생존, 보호, 발달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이런 가운데 1989년 유엔총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을 채택하여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실행적 노력을 강조하였다. 이전까지는 아동권리에 대한 선언이었기 때문에 아동권리에 대한 법적제제를 갖지 못했지만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을 채택한 이후 아동권리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됨으로써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수 있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1991년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 비준하여 협약 당사국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아동권리에 대한 개념인식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였고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조차 대중에게 알려지지 못하였다(서영숙, 2010).

아동은 아직까지 성인의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에게 주어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아동에게 직접 초점을 맞추기보다 먼저 아동과 관계된 성인에게 맞추는 것(조홍식, 1998)이 필요하다. 아동의 생활은 대부분 가정 내에서 가족과 더불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은 아동의 중요한 교육환경이며 가정 내에서의 가족관계는 아동이 경험하는 최초의 사회적 관계로 가족은 아동을 사회적 존재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아동 역시 그 안에서 보호받으며 자라게 된다. 또한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동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요구

를 수용하여 줌으로써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가정교육의 책임자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그들과 시간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김석현(2006)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지 등에 대한 생각은 다양한 형태의 양육태도로 나타나며 자녀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자녀의 성장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Sears(1965)는 부모의 양육방법이나 양육태도, 양육상황이나 조건 등이 아동의 인성발달에 기초적인 역할을 하며 아동이 보이는 모든 행동은 아동이 어떻게 키워졌느냐는 부모의 양육방법의 결과라고 하였다(김윤수, 2003 재인용). 즉, 어머니의 합리적이고 일관되며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 지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신윤옥, 2007) 부모의 적극적이고 애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긍정적인 사회행동에 대한 모델이 되어줌으로써 아동이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여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습득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관계를 탐색할 때 보다 자신감 있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한다(박두미, 2005). 최은경(2009)의 연구 역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및 정서지능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고 자율적일 경우 자녀의 친밀성과 자기정서 이용, 타인 정서 인식 및 배려, 감정조절 충동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아동의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언어적 그리고 신체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아동의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필요한 가정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정숙희, 2002).

어머니의 인식이 어머니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어

머니의 양육 신념이 자녀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어머니의 신념은 아동의 발달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며(안지영, 2000), 부모의 일치된 양육 신념과 태도가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이미자, 2008). 고유희(2001)의 연구에 의하면 지적 성취를 강조하는 양육신념을 가진 어머니일수록 방임적으로 허용하는 양육태도를 보였으며, 성숙을 강조하는 어머니일수록 자율을 격려하고 개인을 강조하는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육태도를 보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의 신념 변인들은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이원희, 1997).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동권리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아동들이 누리는 권리는 거의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신지현, 2004). 또한 아동과 교사, 부모 모두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 중 교사가 제일 높게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만큼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동과 교사, 부모 모두 동일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이소라, 1998). 이는 모두가 아동권리의 중요함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아동에 대한 권리인식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행동으로 표출되며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즉 어머니가 올바른 인식과 양육태도를 갖는다면 긍정적이고 건강하며 사회적인 아동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아동권리에 대해 이루어졌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아동권리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거나(김진숙, 2009; 정오순, 2009; 최윤지, 2010),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김무겸, 2004; 유지민, 2003)과 아동권리에 대

한 아동과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 비교하는 연구(김세진, 2002), 아동권리에 대한 부모의 인식(신지현, 2004; 이혜정, 2006)이나 아동권리에 대한 교사, 부모의 인식에 관한 연구(윤진희, 2006; 이소라, 1998; 장희수, 2009) 등 아동이나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권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권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실천을 알아보고 비교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나 부모의 태도와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아동권리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머니들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1.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어떠한가?
2.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떠한가?
3.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양육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용어의 정의

1) 아동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 1부, 제 1조에서 당사국의 국내법이 성인을 18세 미만보다 어린 나이의 사람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세에서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아동권리

아동권리는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으로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누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 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이며 발달에 맞게 적극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본 연구에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의미한다.

3) 양육태도

부모 혹은 아동의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면서 보이는 언어적·비언어적인 표현과 행동, 정서표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태도이며,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를 의미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아동권리

1) 아동권리의 개념

사람은 누구나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성인 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있으며 사회적 지위와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다.

엘렌 케이(Ellen Key)는 20세기를 ‘아동의 세기’라고 하였으며 아동이 튼튼하게 태어나고 건강하게 키워지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누리고 교육과 도덕적·정신적 훈련을 받으며 즐겁게 생활해야 할 권리가 있음을 이야기하였다(신지현, 2004).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동은 발달상 성인의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인이 가진 권리와 조금은 다르게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권리를 알아보기 전 아동이 무엇이며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아동의 개념은 크게 발달적 관점과, 법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발달적 관점이란 각 연령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특성과 욕구를 중심으로 나누어보는 것으로 발달단계에 따라 태내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아동기는 영아기와 유아기 이후로 6세에서 12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법적 관점이란 한 사회에서 가지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 그리고 제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관련된 법에 따라 아동의 시기를 다르게 말하고 있다(최순옥·윤난호·장수영·이주연·김은숙, 2011).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

의 정의를 살펴보면 먼저 아동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라고 하였으며 초·중등교육법에서는 6세 이상 12세까지의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아동이라고 하였다. 또한 유아보육학사전에서는 신생아에서부터 초등학교를 마칠 때까지의 어린이를 아동으로 정의하였으며 국어사전에서는 신체적·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으로 대략 3세에서 12세 아이로 정의하였다. 또한 유엔아동권리 협약 제 1부, 제 1조를 살펴보면 당사국의 국내법에서 성인을 18세 미만보다 어린 나이의 사람으로 정하지 않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이라고 하는 등 아동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였다.

권리는 자기의 의지를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으로서 법으로 보호되며 이익에 대해 인정되는 힘의 범위를 말하고 법에 의해서 인정된 타인에 대한 자신의 요구를 뜻하는 것이다(유아보육학사전, 2008). 아동권리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권리로서 그 주체인 아동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성인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모든 권리와 행복한 삶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윤진희, 2006). 아동의 권리는 아동으로서 승인되는 아동 고유의 권리와 인간으로서 승인되는 일반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동 고유의 권리라는 것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신체적 요구를 법적으로 승인하는 것으로 그 내용적 원칙은 아동의 인격을 전면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생존을 확보한다는 것이다(황성기, 1994).

조흥식(1999) 역시 아동의 욕구와 관심을 인정하고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동의 권리라고 하였으며 성인의 권리와 구분된다고 하였다. 즉 아동의 여러 가지 욕구가 사회에 의해 인식되고 주장이 될 때 권리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권리의 본질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지민(2003)은 아동의

권리가 아동 고유의 권리와 보편적 권리로 구분되는데 이것은 아동의 권리가 성인의 권리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리는 보편적 권리는 기본적으로 성인의 권리와 동등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의 보호를 위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보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한의 타당성을 명확하게 하며 보호를 위한 제한의 범위가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 뒤따라야 하고 이것은 아동권리의 보장을 위한 필요한 과정이다(황성기, 1994).

아동은 단순히 성인의 보호와 양육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체와 권리의 주체자로 존중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아동권리는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으로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누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 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이며 발달에 맞게 적극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2) 아동권리의 발전 과정

영국의 에글란타인 켈(Jebb) 여사는 1920년 아동복지회를 창설한 후 1922년 ‘세계아동헌장’을 선언하였다. ‘세계아동헌장’은 세계 최초로 5개 조항으로 된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 of the Child)으로 켈(Jebb)은 “인류는 아동들에게 주어야 할 최선의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아동의 신체적·도덕적·정서적 발달을 돕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이를 위해 필요한 요소를 제공해야 함을 강조하였다(최순옥 외, 2011).

아동권리의 발전과정은 아동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논의하고 보장해 온 과

정을 기준으로 삼아 크게 세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 1기는 ‘제네바 선언(1924)’을 중심으로 한 아동권리선언의 탄생기, 제 2기는 세계인권선언의 바탕 위에서 성립한 ‘아동권리선언(1959)’을 중심으로 한 인권의 보편화와 아동권리의 발전기, 제 3기는 ‘유엔아동권리협약(1989)’을 중심으로 한 아동권리의 법제화 시기이다. 이 과정을 통해 특별한 보호대상이나 구제의 대상으로만 인식됐던 아동이 권리 향유 주체의 아동으로 변화하였고 이후 권리 행사 주체자로 발전하였다(백우정, 1994). 아동권리의 발전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기는 ‘제네바 선언(1924)’을 중심으로 한 아동권리선언의 탄생기이다. 제 1차 세계대전으로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동들이 발생하면서 아동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1924년 국제연맹회의에서 아동권리선언을 기초로 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이 채택되었다. 제네바선언(Declaration of Geneva)은 전문과 5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동권리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 문서(최순옥 외, 2011)로서 아동권리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라 할 수 있으며 내용은 표 1과 같다. 하지만 제네바선언은 전쟁 이후 불우한 조건아래 있는 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한다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아동을 보호 대상 이상의 권리 주체로서 인정하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

<표 1> 제네바 선언

전문	<p>모든 나라의 남녀와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종, 국적 또는 신념에 관한 어떠한 사유에도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할 것을 선언하고 또한 자기의 의무로서 수락한다.</p>
내용	<p>1조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측면에서 정상으로 발달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들은 아동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p> <p>2조 굶주린 아동에게는 음식이 제공되어야 하고, 병든 아동은 치료받아야 하고, 발달이 늦은 아동은 도와주어야 하며, 비행아동은 갱생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아와 부랑아는 주거와 원조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p> <p>3조 아동은 위협에 처한 경우에 제일 먼저 구제되어야 한다.</p> <p>4조 아동은 생계를 연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p> <p>5조 아동은 아동이 지닌 재능의 개발이 결국 인류 동포에게 공헌한다는 인식 아래서 양육되어야 한다.</p>

제 2기는 ‘아동권리선언(1959)’을 중심으로 한 인권의 보편화와 아동권리의 발전기이다. 1959년 유엔은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한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고 “아동은 충분한 성장을 위하여 애정과 물질적인 안정 속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와 사회는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와 돌봄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다(배화옥, 2010). ‘아동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아동이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와 장애 아동의 특별한 보호 내용 등 이전과 달리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제네바선언이나 유엔아동권리선언은 선언으로서 아동권리를 촉구하는 것

이므로 법적효력이나 제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표 2> 유엔 아동권리 선언 10조항

조항	내용
1조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국가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문벌, 기타의지위로 인하여 차별받는 일이 없이 이들의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2조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또한 건전하며 정상적인 방법 및 자유와 존엄의 상태 하에서 신체적, 지능적, 도덕적, 정서적 및 사회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나 혜택이 법률과 기타의 수단으로써 제공되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대하여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3조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4조	아동은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조	신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는 아동은 그 특수 사정에 의해 필요한 특별한 치료, 교육 및 보호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6조	아동은 가능한 한 양친의 사람과 책임 하에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애정과 도덕적 및 물리적 보장이 있는 환경 하에서 양육되어야 한다.
7조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8조	아동은 우선 보호와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9조	아동은 방임이나 학대 및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0조	아동은 인종적, 종교적, 기타의 형태에 의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관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3기는 ‘유엔아동권리협약(1989)’을 중심으로 한 아동권리의 법제화 시기이다. 유엔은 유엔아동권리 선언 40주년과 세계 아동의 해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89년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였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국가로 하여금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효력을 가지게 하여 아동권리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이재연 외, 2007). 또한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주체로 보았으며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권리를 제한 받아왔던 아동에 대해서도 연령과 발달단계에 맞게 적극적으로 아동권리를 보장하려하였다(윤진희, 2006).

우리나라도 세계 흐름에 맞추어 1991년 11월 20일에 이 협약의 3개 조항(9조 3항, 21조 가항, 40조 2항 나호 등)을 유보하고 나머지 조항을 비준함으로써 1991년 12월 20일부터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3) 유엔 아동권리협약

(1) 아동권리협약 내용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은 국가로 하여금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효력을 가지게 하여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주체로 보았으며 적극적으로 아동권리를 보장하였다.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아동의 구체적인 삶을 포괄하고 있으며 전문과 총 54개의 조항으로 된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정래,

2002). 본문은 다시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 1부는 실천원칙·방법·아동 권리의 유형이며 아동권리협약의 제 1조에서 제 41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아동의 정의, 차별의 금지,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부모 등의 책임 존중, 생명권, 아동의 의사표현권, 의사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생활 보호의 자유, 건강 및 의료지원, 사회보장권 등 구체적인 아동권리의 보장 내용을 담고 있다. 제 2부는 홍보·아동권리위원회 설치·보고서 제출 등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국의 실천 의무로 아동권리협약 제 42조에서 제 45조에 해당한다. 제 3부는 부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아동권리협약 제 46조에서 제 54조에 해당하며 협약의 비준 절차와 협약개정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이혜원, 2006).

아동이 권리의 주체라는 점에서 시작된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여기에는 3개의 기본원칙을 담고 있다. 그것은 제 2조 차별금지의 원칙과 제 3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그리고 제 12조 아동의 의사표현권, 즉 참여의 원칙이다. 협약의 모든 조항은 궁극적으로 아동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다(이재연 외, 2007). 차별금지도 아동의 이익을 고려한 것이고 아동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도모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동권리협약의 3대 기본원칙은 한 가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김정래, 2002).

(2) 아동권리의 유형

아동권리는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으로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누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차별 받지 않고 살아갈 권리이며 발달에 맞게 적극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아동권리는 아동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적절하게 제공(provision)받고, 열악한 환경으로부터의 보호(protection)받으며,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결정에 참여(participation)하는 것으로 제공·보호·참여의 3P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재연 외, 2007). 3P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공(provision)은 아동의 생존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받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공은 아동의 욕구와 관심을 인정하고 충족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름과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권리, 교육 및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복지, 연가 및 문화 활동의 기회 제공과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아동, 장애아동, 난민아동이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두 번째, 보호(protection)는 열악하고 유해한 환경이나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분쟁이나 착취 상황, 자유의 박탈, 법적으로 금지된 노동 등으로부터 아동에 대해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형태의 착취와 학대로 부터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세 번째, 참여(participation)는 아동이 자신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하여 알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동의 동의가 필요한 의사결정에는 친권상실, 이혼, 입양 등에 아동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며 자신의 삶을 결정하는데 간섭을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배화옥, 2010).

이와 같이 아동권리의 3P 개념에 근거하여 Save the Children(1999)은 아동 권리협약의 제 1부 제 6조에서 제 40조에 걸쳐 규정된 아동 권리를 크게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개념을 정의하였고(이혜원, 2006) 이들 네 가지 유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존권은 아동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가며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는 등 아동이 생명

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이다. 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으로는 제 6조 생명권으로 모든 아동은 고유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아동이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제 7조 성명 및 국가권, 제 8조 신분 보존권과 아동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 9조 부모로부터의 분리 제한, 제 19조 폭력·학대·착취 등으로부터의 보호, 제 32조 노동 착취 방지 및 보호, 제 33조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로부터의 보호, 제 34조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제 35조 아동의 약취, 유괴, 유인, 매매, 거래 금지, 제 38조 무력분쟁시의 아동보호, 등의 조항이 있다. 또한 기본적인 사회적 지원을 받고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 24조 건강 및 의료지원, 제 26조 사회보장권, 제 27조 적정생활수준 향유권 등이 보장되어 있으며 특별한 요구가 있는 아동을 위해 제 20조 결손 아동의 특별보호, 제 21조 입양제도, 제 23조 장애 아동의 보호, 제 30조 소수자·원주민 아동의 보호, 제 39조 피해 아동의 사회복지 지원 등을 명시하였다.

둘째,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이다. 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으로는 제 2조 차별의 금지로 모든 아동은 누구에게나 차별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 7조 성명 및 국가권, 제 10조 가족 재결합을 위한 출입국보장 등을 통해 아동이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고, 부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제 22조 난민 아동의 보호, 제 23조 장애 아동의 보호, 제 30조 소수자·원주민 아동의 보호를 통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가 제공되어야 하며 제 19조 폭력·학대·착취 등으로부터의 보호, 제 32조 노동 착취 방지 및 보호, 제 33조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로부터의 보호, 제 34조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제 35조 아동의 약취, 유

괴, 유인, 매매, 거래 금지, 제 36조 기타 형태의 착취 금지, 제 37조, 아동에 대한 고문, 사형 등 일체의 가혹 행위 금지 등을 통해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제 11조, 제 16조, 제 20조, 제 21조, 제 23조, 제 25조, 제 38조, 제 39조, 제 40조 등을 통해 모든 아동은 그들의 나이와 발달에 맞게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셋째, 발달권은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이나 비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여가를 즐기거나 문화생활을 하고, 생각과 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아동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이다. 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으로는 제 6조 생명권으로 국가는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제 17조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 제 28조 교육권, 제 29조 교육의 목표, 제 31조 휴식·여가 및 문화 활동의 참여 등을 통해 아동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시켜주어야 하며 휴가와 여가를 즐기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제 7조, 제 9조, 제 10조, 제 11조, 제 14조, 제 24조 등을 통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참여권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권리,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에 참여하는 등 아동이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으로는 제 12조 아동의 의사표현권으로 아동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제 13조 의사표현의 자유에서 아동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제 15조 결사·집회의 자유, 제 17조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 제 18조 부모의 양육책임 등을 통해 아동이 자유롭게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아울러

부모는 아동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한다.

생존·보호·발달권은 아동이 가지는 고유의 권리로서 생존과 절적한 성장·보호와 발달을 국가에게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참여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며, 아동이 최선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자기 결정권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일정한 사적인 것에 대해서 공권력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개인의 인격적 생존에 불가결한 권리가 포함된다(신지현, 2004).

4) 선행연구 고찰

아동권리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각 학문 분야에 관련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법 조항들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이 알려졌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연구로는 1997년 이재연과 강성희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의 연령에 따라 권리의 중요성과 현재 이러한 권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를 알아본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이다. 이 연구에서 대다수의 아동들은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권리는 중요하지만 실제 그만큼의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연령이 높은 아동들은 권리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권리는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은 아동들은 권리의 중요성은 낮게 인식하고 실제 누리고 있는 권리는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방법을 그대로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부모·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이소라(1998)의 연구 결과 역시 아동·부모·교사들은 아동권리에 대해 중요하거나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보유정도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결과 권리의 중요성 인식에서는 아동보다 교사와 부모가 훨씬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보유하고 있는 권리 인식에서는 아동·부모·교사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외에도 부모와 교사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연구들도 이루어졌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지현(2004)은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들은 아동권리를 대체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실제 우리 아동들이 누리는 권리는 거의 없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위 항목들을 살펴보면 아동의 자기결정권이나 자율성에 관계된 내용보다는 생존이나, 보호 양육에 해당되는 권리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혜정, 2006)을 살펴보면 가구소득에 따라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아동권리를 누리는 정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학력은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아동권리를 누리는 정도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머니의 취업여부, 연령, 자녀수 등에 따른 아동권리의 인식에는 차이가 없었다.

윤진희(2007)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과 실천에 관한 모형 연구'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학부모의 인식과 실천에 대해 알아보았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학부모, 원장, 교사 순으로 전체적으로 학부모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동권리의 실천평가에서는 학부모가 교사보다 더 낮게 평가했으며 교원과 학부모 모두 인식은 높은 수준이지만 실천정도는 낮게 평가하였다. 영아의 권리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이지영, 2011)을 살펴본 연구 결과 영아의 권리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이 매우 높았으며 권리에 대한 중요성과 실천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이었지만 권리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생존권, 보호권과 같은 보호적 측면이 크고 발달권과 참여권과 같은 자율적 측면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실천수준은 낮았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볼 때 대부분의 학부모와 교사, 아동들은 아동 권리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제 누리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양육태도

1) 양육태도의 개념과 중요성

아동이 태어나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은 부모이며 아동이 가장 처음 경험하게 되는 사회는 가정이다. 가정은 아동이 태어나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의 시작으로 가정 내에서 부모는 자녀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양육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아동과 함께 생활하며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이 사회의 일원으로써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범을 익히도록 돕고 사회적 가치와 가족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이 모든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양육태도란 양육자가 아동을 양육하면서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 양식을 의미하는 것(특수교육학용어사전, 2009)으로 아동의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양육태도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였다. Fishbein(1975)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하나의 문화양식으로 부모가 자녀의 성장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태도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 규정하였다.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으로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뿐 아니라 정서, 인지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Backer, 1964). 또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나타나는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으로서 부모가 인식한 반응양식이며(김명숙, 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일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이다(공영숙, 2012). 이진희(2011)는 부모 또는 그 대행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편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외현적, 내현적인 태도 및 행동을 양육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석현(2006)은 자연스런 생활환경에서 가족과 생활하는 것은 곧 사회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 내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성취감을 북돋아주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해주어야 하며 가정의 분위기를 수용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은 유아의 사회·정서적 발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며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정신 및 자아개념 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전 생애에 걸쳐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까지 부모와의 관계가 지속되는 것으로 특히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성장기에 있는 자녀의 애착의 질과 자아개념 형성 및 발달에 영향을 준다(김홍순, 2002)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양육태도는 부모 혹은 아동의 양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보이는 언어적·비언어적인 표현과 행동, 정서 표현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태도이며,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

2) 양육태도의 유형

부모 - 자녀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유형을 분류하였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처음으로 이론화한 사람은 Symonds(1949)이다. 그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수용 - 거부, 지배 - 복종의 2개의 축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2개의 축을 다시 세분화하였는데 지배는 기대형과 엄격형으로, 복종에는 복종형과 익해형으로 분류하였고, 수용에는 간섭형과 불안형, 거부에는 소극적 거부형과 적극적 거부형의 형태로 분류하였다(김선화, 2010).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부모의 태도는 과호보적, 우세적, 거부적, 복종적 태도가 아닌 중간을 취하는 태도라고 하였다. Symonds의 이론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체계화하려했다는 점에서는 공헌한 바 있으나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만 설명하였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전한 태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정상적인 기준에 의거, 설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이원영, 1983).

반면에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장기적으로 연구한 Schaefer는 Symonds와는 다른 이론 모형을 발표하였다. The Berkeley Growth Study의 일환으로 신생아기부터 초기 청년기에 이르는 동안의 발달과 부모의 양육행동 함께 연구한 Schaefer는 30년 동안의 기록을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두 개의 축, 즉 애정 - 거부의 축과 자율 - 통제의 축으로 분류하였다(이원영, 1983).

Schaefer가 제시한 애정 - 거부, 자율 - 통제 두 축을 중심으로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애정적 - 자율적 태도이다. 애정적 - 자율적 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유, 민주적, 협동적,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녀의 행동에 독립심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태도로 애정적 태도의 장점과 자율적 태도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양육태도이다.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해 허용적이고 관용적이며, 통제나 복종을 피하고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녀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한다(김선화, 2010). 이러한 양육행동 및 태도를 지닌 부모 슬하에서 성장하는 아동은 능동적, 외향적이고 독립적이며 사회적응을 자신 있게 하며 사교적이고 창의적이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적대감이 없다. 그러나 가정 외에서 잘 적응하는 이러한 아동들도 집에서는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거나 약간의 공격성, 고집을 보일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부모에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이원영, 1983).

두 번째 유형은 애정적 - 통제적 태도이다. 애정적 - 통제적 태도는 과보호형의 양육태도로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접촉이나 의존성을 조장하고 과보호와 소유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제약을 많이 하는 것이다. 이런 부모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할 때 좌절감을 느끼며 새로운 탐색을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반응습득의 기회를 축소시킨다(표옥자, 1996). 애정적이며 자율성을 부여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유아보다 애정적 - 통제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동들은 더 의존적이고 사교성, 창의성이 적은편이며 상상적인 적재감정을 품는다. 또한 이러한 부모는 체벌을 수반한 통제는 아니더라도 심리적 통제를 쓸 수 있다(이원영, 1983).

세 번째 유형은 거부적 - 자율적 태도이다. 거부적 - 자율적 태도는 방임형 양육태도로서 부모가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시에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하는 태도로 부모가 자녀에게 거부적이며 소홀하고, 무관심과 거리감을 갖는다. Becker와 Kessler의 연구(1966)에 의하면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공격적이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한다(이원영, 1983에서 재인용). 또한 불안정한 정서와 움츠러드

는 행동을 보이고 자신의 분노나 감정을 가정 밖의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김석현, 2006),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정서적인 문제나 미성숙한 행동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김선화, 2010).

네 번째 유형은 거부적 - 통제적 태도이다. 거부적 - 통제적 태도는 독재적 양육태도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적이며 독재적이고 요구를 반복하며 거부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자녀를 따뜻하게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행동을 체벌 또는 심리적 통제로 규제하는 태도이다. 이는 결혼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며 불안정한 부모들이 많이 보이는 양육태도(김선화, 2010), 이런 부모는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불안정하여 일관성 없는 태도로 심하게 훈육하며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유아의 행동과 태도를 평가하고 복종을 강요하며 체벌을 가한다(표옥자, 1996).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동은 자아에 대한 분노가 발생하며 내면화된 갈등, 고통을 많이 갖고 있다(이원영, 1983).

이외에도 Roe & Siegelman(1963)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 - 거부, 무관심 - 강요, 관심 - 무관심의 3개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Becker(1964)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온정성 - 적대성 차원과 허용성 - 제한성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Baumrind(1967)는 양육태도의 유형을 독재적 태도(authoritarian attitude), 허용적 태도(permissive attitude), 권위적 태도(authoritative attitude)로 분류하였고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유아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하면 사회적 관계에서 불안감을 나타내며, 허용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유아는 대체로 미숙하고 사회적 책임감이 낮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어머니 양육 태도의 유형을 분석한 연구(이숙, 1988)에서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양육 태도를 구성하는 요인은 온정 요인과 거부 - 권위적인 요인으로 분류되며, 이 두 가지 요인은 독립적인 두 개의 차원을 구성한

다. 연구에서 온정 요인은 자녀를 애정으로 대하지만 적절한 통제와 간섭을 함으로써 자녀를 보호하려는 요인이며, 거부 - 권위주의적인 요인은 자녀에게 무관심, 무시를 나타내는 반면에 자녀의 행동에 대해 간섭을 하는 태도이고 이 두 가지 요인 즉 온정요인과 거부 - 권위주의적 요인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가 우리나라 부모의 대표적 양육태도 유형이라 하였다.

한종혜(1980)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수용 - 적대·거부, 민주·자율 - 권위·통제의 2개 차원으로 분류하였고 이원영(1983)은 Schaefer(1959)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번안·수정하여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애정, 거부, 외향성, 의존성조장, 통제, 긍정적 평가, 독립심의 7개 요인을 제시하였다.

3)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머니의 성격이나 연령, 학력 등 어머니의 배경 변인이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가정의 소득, 양육경험, 자녀의 특성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김옥민(1984)은 자녀 양육에 대한 과거의 경험, 자녀관, 어머니의 교육 정도, 사회·경제적 수준, 자녀의 성, 자녀의 행동 특성, 가족의 크기, 전통적 문화 양식, 역할 모형 등이 자녀 양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처럼 양육태도는 여러 가지 사회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여러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어머니의 연령과 교육수준, 가정소득, 어머니의 취업유무 등 어머니의 배경변인과 자녀의 연령과 성별 등 자녀의 배경변인을 살펴보고 한다.

먼저 어머니의 배경변인 중 어머니의 연령이 양육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최수진(2002)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31~35세 어머니가 30세 이하 혹은 36세

이상의 어머니에 비해 더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 이원영(1983)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연령이 31~36세 일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제일 높게 나타난 반면, 36세 이상일 때 제일 낮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녀에게 무관심해지거나 소홀해질 수 있고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며, 25세 이하인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지식 또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육태도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Bayley와 Schaefer(1967)의 연구에 의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협동적이며 자녀와 동등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고 높은 자율적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원영(1983) 역시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거부·통제·의존성 조장의 정도가 낮고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의 경우 거부·통제·의존성 조장의 정도가 심하고 낮은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보다 애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며(한종혜, 1980)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더 자율적인 태도로 양육하고(최수진, 2002),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하일 경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보다 거부적이며 체재적인 양육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숙희, 2002).

가정 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정소득이 높을수록 더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보이고 양육태도 하위 유형 중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더 높은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였다(최수진, 2002). 김원희(2002) 역시 가정 소득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자율적 양육태도에 영향이 미친다고 하였으며 가정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 소득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현대 사회가 되면서 어머니들의 취업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태도에 대한 관심을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태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취업한 어머니와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 간의 전체 양육태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양육태도의 하위유형별로 살펴보면 취업한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자율적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윤옥, 2007). 즉 취업한 어머니의 경우 유아와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자녀를 독립적으로 키우려는 성향이 많아 자녀가 스스로 결정을 내고 책임을 지는 태도를 가지도록 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최수진(2002)의 연구에서 취업한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에 비하여 조금 더 바람직한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위유형을 살펴보면 취업한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보다 더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태도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도 있다. 장인숙(2001)은 ‘자녀양육에 대한 죄책감, 격리불안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취업한 어머니와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자녀에 대한 죄책감이나 격리 불안, 양육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높다고 하여도 최근 들어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와 사회활동의 증가로 어머니의 가치관이나 사고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취업유무와 관계없이 새로운 차원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 및 교육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자녀의 배경변인을 중 자녀의 성별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살펴본 Bayley와 Schaefer(1967)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차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다르게 나타났으며 사회계층의 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여아보다는 남아에게 더 자율성을 주는 편이라고 하였다. 자녀가 남아일 경우 어머니가 자녀

를 키우는데 보다 더 엄격하며 보다 더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가지며(한중혜 · 홍계옥, 2000), 자녀가 남아일 경우 통제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났고 여아일 경우 애정적 양육태도가 높게 나타났다(최은경, 2009). 반면 최수진(2002)의 연구에서는 남아를 둔 어머니가 높은 애정적 · 자율적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여아를 둔 어머니는 남아를 둔 어머니에 비해 낮은 거부적 ·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고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에 있어서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다고 한 김석현(2006)은 만 4세의 어머니들보다 자녀가 만 3세, 만 5세의 어머니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애정적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지만 자녀의 연령, 성별이나 형제 수, 출생순위가 어머니의 자녀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조정자, 2000; 정예뿐, 2003)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가정의 소득, 어머니의 취업유무, 그리고 자녀의 성별 및 연령 등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 1세에서 만 5세 자녀를 둔 어머니 270명이다. 연구 대상의 선정은 서울시의 교육청과 보육정보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지역별로 1곳씩 총 50곳(어린이집 25곳, 유치원 25곳)을 선정하여 전화로 조사를 의뢰하였고 연구의뢰를 수락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행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연령별 분포에서는 31~35세가 4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6~40세가 33.3%, 26~30세와 41세 이상이 각각 10.4%였다.

학력은 대졸이 47.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대졸이 22.2%, 고졸이 19.3%이었으며 대학원 이상의 경우는 11.5%였다.

연구대상자 중 직업이 있는 경우는 67.4%이고, 직업을 가지지 않은 가정주부는 32.6%였다. 직업의 종류로는 사무직이 23.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직이 17.8%, 서비스직 7.4%, 교직 7.0%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소득에서는 501만원 이상이 38.1%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 그 다음으로는 301-500만원이 35.9%, 300만원 이하가 25.9%였다.

자녀의 성별은 남아가 52.6%, 여아가 47.4%였으며 자녀의 나이는 만 5세가 30.0%, 만 3세는 23.7%, 만 2세는 20.0%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N=270

배경변인	구분	N	%
연령	26~30세	28	10.4
	31~35세	124	45.9
	36~40세	90	33.3
	41세 이상	28	10.4
학력	고졸	52	19.3
	전문대졸	60	22.2
	대졸	127	47.0
	대학원 이상	31	11.5
직업	네	182	67.4
	아니오	88	32.6
직업종류	전문직	48	17.8
	사무직	62	23.0
	단순노동직	7	2.6
	자영업	6	2.2
	서비스업	20	7.4
	교직	19	7.0
	기타	20	7.4
	무직	88	32.6
소득	300만원 이하	70	25.9
	301~500만원	97	35.9
	501만원 이상	103	38.1
자녀성별	남	142	52.6
	여	128	47.4
자녀나이	만1세	19	7.0
	만2세	54	20.0
	만3세	64	23.7
	만4세	52	19.3
	만5세	81	30.0

2. 연구 도구

1) 아동권리에 대한 부모의 인식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1989년 UN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1993년 Hart와 Zeider가 'Children's Rights Perspectives of Youth and Educator: Early Findings of a Cross National Project'를 통해 개발한 문항을 기초로 하여 1998년 이소라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아동, 부모, 교사의 인식'에서 이용된 검사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검사지는 아동권리협약의 3원칙인 제공, 보호, 참여를 바탕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영역으로 구성되고 있다. 또한 검사지의 내용은 아동 권리의 중요성 인식에 관한 내용으로 40문항이며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검사지의 구성내용 및 문항내용은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 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아동권리 전체에 대한 신뢰도는 .76으로 나타났다. 하위 유형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생존권 10문항의 신뢰도는 .71이고, 보호권 9문항은 .77, 발달권 11문항은 .76, 참여권 10문항은 .62로 나타났으며 검사지의 하위 유형별 문항 번호와 신뢰도는 표 5와 같다

<표 4> 아동권리의 유형별 문항내용

원칙	권리유형	문항 내용
생존권	정신건강 서비스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나 기분이 나쁠 때 성인의 도움을 받는 것
	의료지원 및 서비스	아플 때 치료 받을 수 있는 것
	건강하게 자랄 권리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
	생활수준유지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
	재해로부터 즉각적 구조	전쟁, 화재, 지진, 홍수 등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즉시 도움을 받는 것
	생명존중권	누구나 생명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는 것
	사생활권	남의 눈치 볼 필요 없는 아동만의 장소와 시간을 갖는 것
	경제적 권리	마음껏 쓸 만큼의 돈이 있는 것
	양육제공의 권리	아동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공부할 장소	공부 할 장소를 갖는 것
보호권	부모로부터의 비분리	부모 모두와 함께 살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법정대리인(후견인)	아동을 보살피고 주고 필요하면 아동의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 것
	사법문제에서의 처우	사람들이 아동을 나쁘게 생각하더라도 아동을 공평하게 대접해 주는 것
	차별방지	아동의 종교, 언어, 피부색, 신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것
	권리비참권	어른이 되기 전까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권리보장	아동의 권리를 책임 있는 사람이 존중해 주는 것
	유해한 노동 금지	위험하거나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는 노동을 하지 않는 것
	심리적 보호	아동의 감정을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 받는 것
신체적 보호	아동의 몸을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 받는 것	
발달권	정보제공권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것
	여가 및 놀이여가권	놀이를 즐기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	다른 사람의 종교, 언어, 피부색, 사회적 신분을 존중할 줄 아는 것
	능력 및 자질개발권	아동이 가진 모든 능력과 자질을 개발하는 것
	교육받을 권리	아동의 능력과 노력이 허락하는 한 최고의 좋은 교육을 받는 것
	사회정의의 교육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울 기회를 가지는 것
	종교선택의 자유	아동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성인의 관심과 지도	아동이 잘되기를 바라는 어른의 관심과 지도를 받는 것
	책임 있는 청년기 교육권	나이가 들면서 책임이 많고 무거워 진다는 것을 아는 것
	부모로부터의 독립권	때가 되어 아동이 원하면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것
교육적 원조 및 제공	아동이 배우기 위해서 바라는 만큼의 도움을 얻는 것	
참여권	다른 사람들과의 교섭	다른 사람과 잘 사귀는 것
	아동의 의사반영	아동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 아동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것
	의사존중의 권리	아동과 관계된 계획이나 일을 할 때 아동의 입장이나 희망사항이 존중되는 것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교섭	아동을 좋아하는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
	원하는 사람과의 교섭	스스로 마음먹은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
	행동의 선택 및 결정권	아동의 나이에 맞는 행동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권리
	시민적 자유권	아동 방식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존중받는 것
	고유한 생각, 의견의 권리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존중해주는 아동만의 생각, 의견을 갖는 것
	긍정적 사회활동 참여권	아동과 다른 사람의 삶을 좋게 만드는 일은 하는 것
	애정표현의 권리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갖는 것

<표 5> 아동권리 검사지의 하위 유형별 문항 번호 및 신뢰도

아동권리	문항수	문항번호	Chronbach's α
생존권	10	1, 6, 7, 9, 18, 20, 21, 23, 25, 35	.71
보호권	9	2, 3, 4, 11, 22, 30, 32, 34, 40	.77
발달권	11	10, 14, 16, 17, 19, 26, 28, 31, 33, 36, 39	.76
참여권	10	5, 8, 12, 13, 15, 24, 27, 29, 37, 38	.62
계	40		.76

2) 어머니의 양육태도 측정도구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는 Schaefer의 MBRI(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이원영(1983)이 번안하여 사용한 검사도구로 MBRI는 Becker(1964), Mussen과 Conger와 Kagan(1969)의 연구에서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며, 이원영(1983)에 의해 우리나라에 적용하더라도 무리가 없음이 입증되었다. MBRI는 총 28문항 154개 하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가지 유형(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어머니의 외향적 특성, 의존성 조장태도, 통제적 태도, 긍정적 평가태도, 어머니의 의존성)을 측정하도록 되어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원영(1983)이 제작한 것을 표옥자(1996), 최은경(2009)등이 재구성하여 만든 검사지로 양육태도를 두 개의 축으로 대별되는 4개의 하위유형(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으로만 제한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각각 6문항씩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중 1, 2,

10, 11, 12, 13, 16, 17, 18, 19, 22, 24 문항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일수록 [매우 그렇다]에 표시하게 되고, 반면 3, 4, 5, 6, 7, 8, 9, 14, 15, 20, 21, 23 문항은 바람직한 양육태도일수록 [매우 그렇다]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hronbach's a* 계수를 이용하여 내적 일관성에 의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양육태도의 하위 유형별 신뢰도를 살펴보면 애정적 태도는 .75, 거부적 태도는 .73, 자율적 태도는 .66, 통제적 태도는 .66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 질문지의 각 하위 유형별 문항과 신뢰도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양육태도 검사지의 하위 유형별 문항 번호 및 신뢰도

양육태도	문항수	문항번호	<i>Chronbach's a</i>
애정적 태도	6	3, 4, 5, 8, 14, 15	.75
거부적 태도	6	1, 2, 10, 11, 18, 19	.73
자율적 태도	6	6, 7, 9, 20, 21, 23	.66
통제적 태도	6	12, 13, 16, 17, 22, 24	.66

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본 조사 이전에 각각의 검사지의 신뢰도 및 문항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10일 동안 1, 2차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유아교

육전문가와 교사 8명을 대상으로 학부모들에게 적합하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1년 10월 20일에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교사들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내용이 애매하거나 어휘가 부적절한 문항들을 파악하여 수정·보완하여 검사지를 재작성 하였다. 2차 예비조사는 2011년 10월 26일부터 28일에 실시하였고 본 연구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아의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일부 난해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2) 본 조사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거쳐 완성한 검사지를 이용하여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2년 1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 검사지의 배부는 본 연구자가 기관에 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연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후 기관장이 허락하는 곳에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검사지를 기관에 전달하고 교사가 학부모, 아동을 통해 배부·회수하였다. 검사지는 서울시에 위치한 유치원 6기관과 어린이집 12기관(직장어린이집 7, 국공립 2, 민간 2, 가정 1)등 총 18기관에 420부를 배부하였고 이중 296부를 회수하여 70.4%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회수된 검사지 중 질문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 26부를 제외한 270부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 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분석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실시하였으며, 아동권리와 양육태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각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a*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집단별로 아동권리와 양육태도의 유의한 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증과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Duncan*의 다중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권리와 양육태도 하위 영역별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배경변인과 자녀배경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정도와 양육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문제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1)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점수는 1~5점의 5점 척도 문항 평균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으며 아동권리에 대한 평균값은 전체적으로 4.68점($SD=.28$)으로 만1~5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권리의 하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생존권 4.83점($SD=.26$), 보호권 4.78점($SD=.35$), 발달권 4.40점($SD=.46$), 참여권 4.73점($SD=.37$)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생존권이 4.83($SD=.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발달권의 경우 4.40($SD=.4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7>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N=270

아동권리	M	SD
생존권	4.83	.26
보호권	4.78	.35
발달권	4.40	.46
참여권	4.73	.37
전체	4.68	.28

이를 토대로 각 항목별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권리 항목과 다른 권리에 비해 중요성이 비교적 낮게 인식하고 있는 권리 항목을 구하여 표 8에 제시하였다. 어머니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항목에는 생존권에 해당하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 ‘의료지원 및 서비스’, ‘생명존중권’ 보호권에 해당하는 ‘부모로부터의 비분리’로 생존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에 다른 권리에 비해 중요성이 비교적 낮게 인식하고 있는 항목은 생존권에 해당하는 ‘경제적 권리’와 발달권에 해당하는 ‘부모로부터의 독립권’, ‘종교선택의 자유’, 참여권에 해당하는 ‘시민적 자유권’으로 발달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8>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권리항목	M	SD
건강하게 자랄 권리	4.97	0.16
의료지원 및 서비스	4.94	0.25
부모로부터의 비분리	4.91	0.31
생명존중권	4.89	0.33
신체적 보호	4.88	0.40
양육제공의 권리	4.87	0.38
재해로부터 즉각적 구조	4.83	0.46
사회정의 교육권	4.80	0.47
다른 사람들과의 교섭	4.79	0.47
능력 및 자질개발권	4.77	0.48
차별방지	4.77	0.49
여가 및 놀이여가권	4.75	0.48
법정대리인(후견인)	4.75	0.53
다른 사람의 권리 존중	4.73	0.51
심리적 보호	4.73	0.55
유해한 노동 금지	4.72	0.61
의사존중의 권리	4.71	0.50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교섭	4.70	0.53
성인의 관심과 지도	4.70	0.57
아동의 의사반영	4.70	0.53
권리보장	4.70	0.54
애정표현의 권리	4.69	0.52
교육받을 권리	4.64	0.63
정보제공권	4.62	0.56
정신건강 서비스	4.61	0.63
생활수준유지	4.61	0.65
사법문제에서의 처우	4.60	0.65
고유한 생각, 의견의 권리	4.58	0.66
긍정적 사회활동 참여권	4.48	0.74
행동의 선택 및 결정권	4.48	0.67
전쟁비참가권	4.47	0.93
교육적 원조 및 제공	4.46	0.69
원하는 사람과의 교섭	4.42	0.73
사생활권	4.30	0.74
책임 있는 청년기 교육권	4.29	0.85
공부할 장소	4.25	0.77
시민적 자유권	4.25	0.82
종교선택의 자유	3.98	0.97
부모로부터의 독립권	3.82	1.00
경제적 권리	3.41	1.04

2) 어머니의 배경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어머니의 배경 변인에 따른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배경변인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분산분석 및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배경변인은 어머니의 연령, 학력, 취업유무, 가정의 소득 등의 항목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어머니의 취업유무, 가정의 소득은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31~35세가 4.70점($SD=.2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1세 이상이 4.69점($SD=.23$), 36~40세가 4.68점($SD=.29$), 26~30세가 4.62점($SD=.30$)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동권리 하위 유형에 대한 어머니 인식을 살펴보면 생존권은 31~35세가 4.85점($SD=.25$)을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6~40세가 4.84점($SD=.28$), 41세 이상이 4.81점($SD=.25$), 26~30세는 4.74점($SD=.26$)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보호권은 31~35세가 4.81점($SD=.2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6~40세가 4.79점($SD=.35$), 41세 이상이 4.75점($SD=.41$), 26~30세가 4.63점($SD=.43$)으로 가장 낮은 보호권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79, p<.05$).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26~30세의 어머니들이 다른 연령의 어머니들보다 보호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권은 41세 이상이 4.46점($SD=.3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1~35세가 4.42점($SD=.47$), 26~30세가 4.41점($SD=.49$), 36~40세가 4.36점($SD=.47$)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참여권은 41세 이상이 4.74점($SD=.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1-35세가 4.73점($SD=.38$), 26~30세와 36~40세가 각각 4.72점($SD=.39$, $SD=.36$)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권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9>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아동권리 인식

$N=270$

아동권리	어머니 연령	N	M	SD	F	Duncan
생존권	26-30세 ㉠	28	4.74	.26	1.51	
	31-35세 ㉡	124	4.85	.25		
	36-40세 ㉢	90	4.84	.28		
	41세 이상 ㉣	28	4.81	.25		
보호권	26-30세 ㉠	28	4.63	.43	2.79*	b,c,d>a
	31-35세 ㉡	124	4.81	.29		
	36-40세 ㉢	90	4.79	.35		
	41세 이상 ㉣	28	4.75	.41		
발달권	26-30세 ㉠	28	4.41	.49	.49	
	31-35세 ㉡	124	4.42	.47		
	36-40세 ㉢	90	4.36	.47		
	41세 이상 ㉣	28	4.46	.39		
참여권	26-30세 ㉠	28	4.72	.39	.02	
	31-35세 ㉡	124	4.73	.38		
	36-40세 ㉢	90	4.72	.36		
	41세 이상 ㉣	28	4.74	.35		
총점	26-30세 ㉠	28	4.62	.30	.63	
	31-35세 ㉡	124	4.70	.27		
	36-40세 ㉢	90	4.68	.29		
	41세 이상 ㉣	28	4.69	.23		

* $p<.05$

(2)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에 대해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의하면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고졸이 4.76점($SD=.2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 4.68점($SD=.29$), 전문대졸 4.66점($SD=.29$), 대학원 이상 4.62점($SD=.29$)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아동권리에 대한 하위 유형별 인식을 살펴보면 생존권의 경우 고졸이 4.88점($SD=.1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대학원 이상이 4.83점($SD=.24$), 대졸이 4.82점($SD=.29$)으로 나타났고 전문대졸이 4.81점($SD=.27$)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권으로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호권의 경우 고졸이 4.83점($SD=.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 이상이 각각 4.77점($SD=.39$, $SD=.35$, $SD=.33$)으로 나타났다. 발달권의 경우 고졸이 4.45점($SD=.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졸이 4.44점($SD=.44$), 전문대졸이 4.34점($SD=.47$)으로 나타났고 대학원 이상이 4.28점($SD=.49$)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참여권의 경우 고졸이 4.87점($SD=.2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이 4.71점($SD=.37$), 전문대졸이 4.70점($SD=.40$)으로 나타났고 대학원 이상 이상의 경우 4.60점($SD=.44$)으로 가장 낮은 참여권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96$, $p<.01$).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고졸이 전문대졸보다 대졸이 대학원 졸보다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 전체적으로 학력이 낮은 고졸이 높고, 학력이 높은 경우에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동권리에의 하위 유형 중 참여권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F=3.96$, $p<.01$),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등에서는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

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0> 학력에 따른 아동권리 분산분석

N=270

아동권리	어머니 학력	N	M	SD	F	Duncan
생존권	고졸㉠	52	4.88	.19	.76	
	전문대졸㉡	60	4.81	.27		
	대졸㉢	127	4.82	.29		
	대학원 이상㉣	31	4.83	.24		
보호권	고졸㉠	52	4.83	.31	.54	
	전문대졸㉡	60	4.77	.39		
	대졸㉢	127	4.77	.35		
	대학원 이상㉣	31	4.77	.33		
발달권	고졸㉠	52	4.45	.48	1.56	
	전문대졸㉡	60	4.34	.47		
	대졸㉢	127	4.44	.44		
	대학원 이상㉣	31	4.28	.49		
참여권	고졸㉠	52	4.87	.22	3.96**	a>b,c>d
	전문대졸㉡	60	4.70	.40		
	대졸㉢	127	4.71	.37		
	대학원 이상㉣	31	4.60	.44		
총점	고졸㉠	52	4.76	.22	1.92	
	전문대졸㉡	60	4.66	.29		
	대졸㉢	127	4.68	.29		
	대학원 이상㉣	31	4.62	.29		

**p<.01

2. 어머니의 양육태도

1)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분석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태도 점수는 1~5점의 5점 척도 문항 평균으로 환산하여 제시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평균값을 살펴보면 애정적 태도 3.12점($SD=.54$), 거부적 태도 3.36점($SD=.65$), 자율적 태도 3.96점($SD=.62$), 통제적 태도 2.42점($SD=.69$)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율적 태도가 3.96점($SD=.6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제적 태도가 2.42점($SD=.69$)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11> 어머니의 양육태도

$N=270$

양육태도	N	M	SD
애정적 태도	270	3.12	.54
거부적 태도	270	3.36	.65
자율적 태도	270	3.96	.62
통제적 태도	270	2.42	.69

2) 어머니의 배경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배경 변인에 따른 양육태도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배경

변인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분산분석 및 *Duncan*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배경변인의 내용은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학력, 어머니의 취업유무, 가정의 소득 등의 항목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 의하면 애정적 태도의 경우 어머니의 연령이 26~30세와 41세 이상이 각각 3.15점($SD=.47$, $SD=.57$)으로 가장 높은 애정적 태도를 보이며 31~35세의 경우 3.11점($SD=.56$)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애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거부적 태도에서는 26~30세의 경우 3.44점($SD=.62$)으로 가장 높은 거부적 태도를 보이며 41세 이상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거부적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통제적 태도에서는 36~40세의 경우 2.54점($SD=.72$)으로 가장 높은 통제적 태도를 보이며 41세 이상의 경우 2.28점($SD=.77$)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통제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율적 태도의 경우에 26~30세가 4.20점($SD=.57$)으로 가장 높은 자율적 태도를 보였으며 41세 이상이 4.01점($SD=.67$), 31~35세가 4.00점($SD=.61$), 36~40세는 3.82점($SD=.63$)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34$, $p<.05$).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26세~30세와 31~35세, 41세 이상과 36~40세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연령이 낮은 30세 이하의 경우에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2>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양육태도

N=270

양육태도	어머니 연령	N	M	SD	F	duncan
애정적 태도	26~30세 [㉠]	28	3.15	.47	.08	
	31~35세 [㉡]	124	3.11	.56		
	36~40세 [㉢]	90	3.13	.54		
	41세 이상 [㉣]	28	3.15	.57		
거부적 태도	26~30세 [㉠]	28	3.44	.62	.41	
	31~35세 [㉡]	124	3.39	.64		
	36~40세 [㉢]	90	3.32	.64		
	41세 이상 [㉣]	28	3.30	.76		
자율적 태도	26~30세 [㉠]	28	4.20	.57	3.34*	a>b,d>c
	31~35세 [㉡]	124	4.00	.61		
	36~40세 [㉢]	90	3.82	.63		
	41세 이상 [㉣]	28	4.01	.67		
통제적 태도	26~30세 [㉠]	28	2.40	.64	1.42	
	31~35세 [㉡]	124	2.38	.66		
	36~40세 [㉢]	90	2.54	.72		
	41세 이상 [㉣]	28	2.28	.77		

* $p < .05$

(2)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에 의하면 애정적 태도의 경우 대학원 이상이 3.27점($SD=.4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의 경우 3.02점($SD=.68$)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애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적 태도에서는 고졸의 경우 3.53점($SD=.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졸의 경우 3.26점($SD=.67$)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거부적 태도를 보였으나 애정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에서는 학력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율적 태도의 경우 대졸과 대학원 이상이 각각 4.07점($SD=.56$)과 4.06점($SD=.54$)으로 가장 높은 자율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졸과 전문대졸이 각각 3.82점($SD=.76$, $SD=.63$)으로 가장 낮은 자율적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3.47$, $p<.05$).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대졸과 대학원 이상이 고졸과 전문대졸보다 자율적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적 태도는 전문대졸이 2.65점($SD=.76$)으로 가장 통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의 경우 2.33점($SD=.67$)으로 가장 낮은 통제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2.82$, $p<.05$).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전문대졸과 고졸, 4년제졸, 대학원 이상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 자율적이며 애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 경우 통제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3>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양육태도

N=270

양육태도	어머니 학력	N	M	SD	F	Duncan
애정적 태도	고졸 [㉠]	52	3.02	.68	2.45	
	전문대졸 [㉡]	60	3.03	.55		
	대졸 [㉢]	127	3.17	.49		
	대학원 이상 [㉣]	31	3.27	.48		
거부적 태도	고졸 [㉠]	52	3.53	.67	2.55	
	전문대졸 [㉡]	60	3.43	.59		
	대졸 [㉢]	127	3.26	.67		
	대학원 이상 [㉣]	31	3.38	.56		
자율적 태도	고졸 [㉠]	52	3.82	.76	3.48*	c,d>a,b
	전문대졸 [㉡]	60	3.82	.63		
	대졸 [㉢]	127	4.07	.56		
	대학원 이상 [㉣]	31	4.06	.54		
통제적 태도	고졸 [㉠]	52	2.39	.74	2.83*	b>a,c,d
	전문대졸 [㉡]	60	2.65	.76		
	대졸 [㉢]	127	2.35	.62		
	대학원 이상 [㉣]	31	2.33	.67		

* $p < .05$

(3)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에 의하면 애정적 태도에서는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3.23점($SD=.50$),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 2.90점($SD=.55$)으로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애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24.46, p<.001$).

거부적 태도나 자율적 태도에서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며, 통제적 태도에서는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2.53점($SD=.65$),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에 2.37점($SD=.70$)으로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높은 통제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보아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양육태도 유형 중 애정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4>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태도

$N=270$

양육태도	취업유무	N	M	SD	t
애정적태도	취업	182	3.23	.50	24.46***
	비취업	88	2.90	.55	
거부적태도	취업	182	3.35	.61	.35
	비취업	88	3.40	.72	
자율적태도	취업	182	3.96	.62	.01
	비취업	88	3.97	.64	
통제적태도	취업	182	2.37	.70	3.28
	비취업	88	2.53	.65	

*** $p<.001$

(4) 가정소득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정소득에 따른 양육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에 따르면 애정적 태도의 경우에 300만원 이하가 3.19점($SD=.64$), 501만원 이상이 3.15점($SD=.50$)으로 높은 애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301~500만원의 경우 3.04점($SD=.49$)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애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거부적 태도에서는 300만원 이하의 경우 3.49점($SD=.66$)으로 가장 거부적 태도를 보였고, 301~500만원과 501만원 이상의 경우 3.32점($SD=.64$)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거부적 태도를 보였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자율적 태도에서는 501만원 이상의 경우 4.14점($SD=.53$)으로 가장 높은 자율적 태도를 보였고, 301만원~500만원이 3.91점($SD=.66$), 300만원 이하의 경우 3.79점($SD=.65$)으로 가장 낮은 자율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7.51, p<.001$).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501만원 이상과 301만원~500만원, 300만원 이하에서 각각 차이를 보여 소득이 많은 어머니일수록 자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제적 태도를 살펴보면 300만원 이하의 경우 2.64점($SD=.73$)으로 가장 높은 통제적 태도를 보였고, 301만원~500만원, 501만원 이상의 경우 각각 2.45점($SD=.64$), 2.25점($SD=.67$)으로 낮은 통제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6.87, p<.001$). 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300만원 이하와 301만원~500만원, 501만원 이상에서 차이를 보여 소득이 낮을수록 통제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가정소득에 따른 양육태도 유형 중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소득이 높은 집단의 경우 높은 애정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를 보였고 소득이 낮

은 집단의 경우 통제적인 태도와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5> 가정소득에 따른 양육태도

N=270

양육태도	가정소득	<i>N</i>	<i>M</i>	<i>SD</i>	<i>F</i>	<i>Duncan</i>
애정적 태도	300만원 이하 [㉠]	70	3.19	.64	1.90	
	301~500만원 [㉡]	97	3.04	.49		
	501만원 이상 [㉢]	103	3.16	.50		
거부적 태도	300만원 이하 [㉠]	70	3.49	.66	1.92	
	301~500만원 [㉡]	97	3.32	.64		
	501만원 이상 [㉢]	103	3.32	.64		
자율적 태도	300만원 이하 [㉠]	70	3.79	.65	7.51***	c>b>a
	301~500만원 [㉡]	97	3.91	.66		
	501만원 이상 [㉢]	103	4.14	.53		
통제적 태도	300만원 이하 [㉠]	70	2.64	.73	6.87***	a>b>c
	301~500만원 [㉡]	97	2.45	.64		
	501만원 이상 [㉢]	103	2.25	.67		

****p*<.001

3.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아동권리와 양육태도 하위 영역별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와 회귀분석을 구하였다.

1)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에 의하면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양육태도 간에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아동권리 인식의 총점은 양육태도의 하위영역인 자율적 태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r=.179, p<.01$), 통제적 태도와는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133, p<.05$).

아동권리의 하위 유형인 생존권의 경우에 애정적 태도와 유의한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142, p<.05$) 보호권도 애정적 태도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136, p<.05$). 또한 발달권의 경우에 자율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176, p<.01$) 참여권의 경우도 자율적 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나($r=.178, p<.01$) 그러나 통제적 태도와는 부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130, p<.05$).

<표 16> 아동권리와 양육태도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생존권	1								
2 보호권	.63**	1							
3 발달권	.42**	.40**	1						
4 참여권	.58**	.39**	.51**	1					
5 아동권리	.77**	.75**	.80**	.78**	1				
6 애정적 태도	-.14*	-.14*	-.01	-.02	-.09	1			
7 거부적 태도	-.05	-.09	-.09	-.10	-.11	.05	1		
8 자율적 태도	.10	.08	.18**	.18**	.18**	.12	-.04	1	
9 통제적 태도	-.07	-.08	-.12	-.13*	-.13*	.10	.20**	-.38**	1

* $p < .05$ ** $p < .01$

2) 아동권리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1)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애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의 하위 유형이 애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생존권과 보호권의 경우에 부적적인 영향을 미치고, 발달권과 참여권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유의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회귀식의 설명력 또한 3%로 설명력이 낮게 나타났으며 표 17과 같다.

<표 17>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애정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B</i>	표준오차	베타	
(상수)	4.49	.62		7.20
생존권	-.28	.17	-.14	-1.61
보호권	-.15	.12	-.10	-1.21
발달권	.06	.09	.06	.75
참여권	.09	.11	.06	.80

R 제곱=.03, *F*=2.09

(2)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자율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의 하위 유형이 자율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발달권이 $\beta = .12$ 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참여권이 자율적인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beta = .13$ 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회귀식의 설명력은 2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권리 하위 유형 중 발달권, 참여권이 자율적 양육태도에 정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8>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자율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B</i>	표준오차	베타	
(상수)	2.44	.72		3.41
생존권	-.01	.20	-.00	-.05
보호권	-.03	.14	-.02	-.20
발달권	.16	.10	.12	2.66*
참여권	.21	.13	.13	2.65*

R 제곱=.24, *F*=2.87*

* $p < .05$

(3)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통제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의 하위 유형이 통제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참여권이 $\beta = -.10$ 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유의수준 $p < .05$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회귀식의 설명력은 12%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권리 하위 유형 중 참여권이 통제적 양육태도에 부적 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9>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통제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i>t</i>
	<i>B</i>	표준오차	베타	
(상수)	3.68	.80		4.61
생존권	.08	.22	.03	.35
보호권	-.07	.16	-.04	-.46
발달권	-.10	.11	-.06	-.87
참여권	-.18	.14	-.10	-1.99*

R 제곱=.12, *F*=1.43

**p*<.05

V. 논의 및 결론

A. 논의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세에서 만 5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머니들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았다. 또한 이와 같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과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연구 문제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점수는 5점 평정척도에서 평균이 4.68점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소라(1998), 신지현(2004), 이혜정(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만 1세에서 만 5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아동권리에 대해 중요하거나 아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아동권리의 하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발달권 순으로 생존권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발달권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권리항목들을

살펴보면 생존권에 해당하는 ‘건강하게 자랄 권리’, ‘의료지원 및 서비스’, ‘생명존중권’ 보호권에 해당하는 ‘부모로부터의 비분리’로 생존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권리 항목에 ‘건강하게 자랄 권리’, ‘부모로부터의 비분리’, ‘의료지원 및 서비스’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소라(1998)와 신지현(2004)의 연구와 일치한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생존권과 보호권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의 성장에 있어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자기결정권이나 자율성에 관계된 내용보다는 생존이나, 보호 양육에 해당되는 권리를 더 중요하게 인식(이지영, 2011)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의 배경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아동권리 전체에 대한 인식은 31~35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아동권리 하위 유형 중 보호권은 26~30세의 어머니들이 다른 연령의 어머니들보다 보호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부모가 40세 이상의 부모보다 아동권리 중요성의 인식은 높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이소라(1998)의 연구 결과와 같으며 어머니의 연령이 아동권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혜정(2006)의 연구와 유사하다.

둘째,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권리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참여권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권리의 대한 인식이 높다는 이혜정(2006)의 연구와 어머니의 학력이 아동권리의 대한 인식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다

는 이소라(1998)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학력과 아동권리의 대한 인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아동권리 인식을 알아본 결과 취업한 어머니보다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미비하며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의 경우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가 취업한 어머니보다 더 높은 수치의 점수를 보였다. 고, 발달권의 경우 취업을 한 어머니가 더 높은 수치의 점수를 보이고 있었으나 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가 더 높은 수치의 점수를 얻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이소라(1998)의 연구와 유사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취업을 한 어머니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이혜정(2006)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과거와 달리 여성의 교육 기회 확대와 사회활동의 증가로 어머니의 가치관이나 사고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장인숙, 2001),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라도 아동은 기관에 보내거나 다양한 특별활동으로 아동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적어졌으며 다양한 매체나 자료를 통해 아동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2. 어머니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평균점수를 살펴본 결과 자율적 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제적 태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애정적, 자율적 태도의 점수가 부정적인 양육태도에 해당하는 거부적, 통제적 태도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애정적으로 양육한다는 선행 연구(조정자, 2000; 최

은경, 2009)와 일치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애정적이며 자율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볼 수 있었다.

어머니의 배경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연령은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 중 자율적 양육태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26~30세가 가장 높은 자율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31~35세 집단이 36세 이상의 집단보다 높은 자율적 태도를 보인다는 최수진(200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온정적이며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정숙희(200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양육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 자율적이며 애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 경우 통제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거부적이고 제재적인 양육태도를 가진다는 정숙희(2002) 연구 결과와는 다르지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애정적이며 수용적인 양육태도(한중혜, 1980)를 보였고, 학력이 높을수록 애정적이며 자율적인 양육태도(최수진, 2002; 김원희, 2002)를 보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교육정도가 낮은 어머니들이 거부적이며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이고 의존성으로 조장시킨다는 이원영(198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유아의 발달과 교육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며 자녀에게 충분히 애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한중혜·홍계옥, 2000) 이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셋째,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애정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에 차이를 보였으며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높은 애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높은 통제적 태도를 보였다. 이는 취업한 어머니가 거부적이며 제재적인 양육태도를 보였고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가 온정적이며 수용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는 정숙희(2002)의 연구결과와 다르지만 취업한 어머니가 애정적이며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는 최은경(2009)과 최수진(2002)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상대적으로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부족하고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에 더 애정적으로 자녀를 대하며,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보니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양육하기 때문에 자율적인 양육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의 경우 취업한 어머니 보다 성인의 통제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성인중심적인 교육관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박옥순, 2008)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것이라 생각된다.

넷째, 가정소득은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소득이 높은 집단의 경우 더 애정적이며 자율적인 태도를 보였고 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 통제적인 태도와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는 가정소득이 높을수록 애정적이며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는 선행연구(최수진, 2002; 김원희, 2002)와 일치한다.

3.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낮은 상관관계는 보였다. 아동권리의 하위 유형인 생존권의 경우에 애정적 태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보호권도 애정적 태도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발달권의 경우에 자율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참여권

의 경우도 자율적 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통제적 태도와는 부적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동권리 전체는 자율적 태도와는 정적인 상관관을 보였으나 통제적 태도와는 부적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이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부모의 신념이 부모의 행동을 유도하고 생활 속에서 자녀를 대하는 구체적인 행동양식으로 표출된다는 고을희(2001)의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어머니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어머니의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양육태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아동권리의 하위 유형이 양육태도에 주는 영향에 대해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태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자율적 태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아동권리의 하위 유형 중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어머니의 교육관과 양육태도에 관계를 살펴본 최희준(2004)에 의하면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일수록 유아의 흥미와 경험 중심으로 자발성을 길러주려 하고 놀이의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한다. 이는 아동권리 중 발달권과 참여권에 유사한 내용으로 애정적이며 자율적인 태도를 가진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자유를 허용하고 민주적이며 협동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권리인 발달권과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양한 집단이나 사회에 참여하는 권리인 참여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아동권리가 거부적 태도에 부적적인 영향을 주었고 아동권리의 하위 유형 중 보호권과 참여권에 부적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적

태도에도 부적인 영향을 주었고 아동권리의 하위 유형 중 참여권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인 어머니들은 성인중심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과정상의 만족보다는 좋은 결과를 바라고 높은 포부수준을 설정 한 후 자녀에게 목표한 일을 달성하도록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인 요구와 지나친 간섭을 한다(최희준, 2004). 이는 아동권리의 하위유형 중 보호권과 참여권에 반하는 것으로 거부적이며 통제적인 양육태도를 가진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권위적이며 독재적으로 요구를 반복하고 자녀를 따듯하게 용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체벌하거나 행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인 보호권과 아동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단체에 가입하거나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부모가 아동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어야 하는 참여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의 의하면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나타난다. 즉 어머니들이 아동권리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아동의 권리를 높이하고자 한다면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표현될 것이며 자녀의 발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사회가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권리를 존중하며 아이들도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알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B.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 1세에서 만 5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아동권리에 대해 중요하거나 아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동권리의 하위 유형 중 생존권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발달권이 가장 낮았다.

어머니의 배경 변인 중 어머니의 연령은 아동권리 하위유형 중 보호권에 영향을 주었으며 30세 이하 어머니가 보호권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고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가정소득, 자녀의 배경 변인인 성별, 연령 등은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하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자율적 태도, 거부적 태도, 애정적 태도, 통제적 태도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자율적 태도가 가장 높고, 통제적 태도가 가장 낮았다.

어머니의 연령은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형 중 자율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26-30세가 가장 높은 자율적 태도를 보였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경우 자율적이며 애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반면 어머니의 학력이 낮은 경우 통제적이며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다.

어머니의 취업유무는 애정적 태도와 통제적 태도에 차이를 보였으며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 높은 애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경우에 높은 통제적 태도를 보였다.

가정소득은 자율적 태도, 통제적 태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소득이 높은 집단의 경우 애정적이며 자율적인 태도를 보였고 소득이 낮은 집단의 경우 통제적인 태도와 거부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자녀의 성별이나 자녀의 연령은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셋째,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낮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아동권리 전체는 자율적 태도와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통제적 태도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동권리의 하위 유형인 생존권과 보호권은 애정적 태도와 유의한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발달권과 참여권은 자율적 태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참여권은 통제적 태도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적 태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거부적 태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주며 아동권리의 하위 유형 중 보호권과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거부적 양육태도에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한 아동권리가 자율적 태도에는 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아동권리의 하위 유형 중 발달권과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아동권리가 통제적 태도에는 부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아동권리의 하위 유형 중 참여권에 대한 인식이 부적인 영향을 주었다.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세에서 5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만 편중되어 전국적 범위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보육 현장에서는 어린이집 유형 중 개인이 설치한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가장 많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장 어린이집이 가장 많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비율이 비슷하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직장 어린이집 특성상 어머니의 학력이나 소득이 높은 집단이 많이 조사되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육 현장의 실태가 반영된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 어머니의 배경 변인을 고려하여 조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조사는 국제적인 조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검사지를 이용하여 권리 의식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한국만의 특수한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권리항목을 포함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리 항목을 포함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직접 검사지의 문항을 읽고 응답하도록 한 후수거한 것으로 질문에 대한 어머니의 실제적인 모습을 응답하기보다 이상적인 행동에 대해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직접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기보다 관찰자가 항목에 해당하는 문항을 읽고 어머니의 실제 행동을 관찰 후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양육행동과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것에 실천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영미(1995).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가족변인과 성별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윤희(2001). 자녀의 성,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양육신념과 양육행동 :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공영숙(2012).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 행동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실행기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국립특수교육원(2009). **특수교육학용어사전** 서울: 도서출판하우
- 김건용·조달현·신지현(2011). **부모의 아동권리인식과 관련법** 경기: 한국학술정보(주)
- 김경선(2006).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또래 간 대인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길녀(2004).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명수(1984).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에 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명숙(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 정서지능과 유아의 사회성간의 관계.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무겸(2004). 초등학교 아동의 권리 인식과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석현(2006). 유아가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에 관한

-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선화(2010).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과 유형 일치여부에 따른 유아의 만족지연능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세진(2002). 초등학교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아동과 교사의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연(2009). 4-5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8(2), 313-324
- 김옥민(1984). 어머니의 자녀양육에 미치는 여러 변인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원희(200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성취동기와 양육태도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윤수(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따른 영유아 발달수준의 차이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래(2002). **아동권리 향연**. 서울: 교육과학사
- 김진숙(2010). 보육교사가 인식하는 영유아권리준중 보육의 의미와 실행수준.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종호(2011).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놀이참여와 유아의 리더십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홍순(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애착과 중학생 자녀의 자아 개념과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두미(2005).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또래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옥순(2008). 모의 자녀교육관이 양육태도와 유아의 자아존중감 관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혜진(2011). 부모의 정서관련 양육신념에 따른 양육행동. 가톨릭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 논문

배현진(201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발달 및 일상스트레스의
관계.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배화옥(2010). **아동과 복지**. 서울: 신정

백우정(1994). 아동권리의 발전과정.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영숙(2010). **아동권리와 보육교사의 전문성**. 2010 추계 보육관련 학회 통
합 학술대회 학회자료집

신윤옥(2007).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태도와 유아 정서지능과의 관
계.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지현(2004).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아동권리 인식조사 연구. 숙명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안지영(2000).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
문

원영숙(2009). 어머니의 낙관성과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아보육사전 편찬위원회(2008). **유아보육학사전**. 경기: 한국사전연구소

유지민(2003). 아동의 권리 인식 및 공감과 권리옹호와의 관계. 숙명여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진희(2006).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아동권리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과
실천에 관한 모형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미자(2008). 유아기 자녀교육과 양육신념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식
비교.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소라(1998).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아동, 부모, 교사의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 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양순(1988).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원희(1997). 부모의 양육태도 및 신념과 유아기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용백(1988). **국어대사전**. 서울: 삼성문화사
- 이윤미(2005). 어머니의 자녀교육관과 양육태도가 자녀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자녀의 자기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재연, 강성희(1997). 권리에 대한 아동의 인식. **한국아동권리학회** 창간호, 65-83
- 이재연, 이소라(1998). 아동의 권리에 대한 아동, 부모, 교사의 인식. **한국아동권리학회**, 2(1), 25-41
- 이재연 외 10인(2007). **아동과 권리**. 서울: 창지사
- 이정희(1986). 어머니가 지각한 결혼만족도 및 자녀 교육관과 양육태도와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진희(2011). 유아의 외로움과 자아존중감, 또래유능성, 어머니 양육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혜원(2006).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경기: 집문당
- 이혜정(2006). 어머니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이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인숙(2001). 자녀양육에 대한 죄책감, 격리불안 및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태

- 도에 미치는 영향 : 취업모와 비취업모를 대상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희수(2009). 아동권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조사. 세
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인옥·이경옥(1999). 유아의 자기 효능감에 대한인과 모형 탐색 - 사회경
제적 지위,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양육에 대한 자기 효능감, 양
육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9(1), 169-187
- 정숙희(2002). 유아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육관의 관계연구. 중앙대학교 사회
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지연(2004).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양육태도 및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오순(2009). 아동권리에 대한 유아교원의 인식 및 아동권리교육 탐색. 한
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예쁜(2003). 어머니 특성과 유아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정자(2000). 유아의 출생환경에 따른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성취도의 차
이.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흥식(1998) .아동권리와 가족지원, **한국아동복지학**, 7(1), 9-33
- 조흥식(1999). 아동권리신장 방안, **아동과 권리**, 3(2), 85-98.
- 최수진(2002). 어머니의 유아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순옥·윤난호·장수영·이주연·김은숙(2011). **아동복지의 이해**. 서울: 태영출
판사
- 최윤지(2010). 보육교사의 유아의견 존중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 논문

- 최은경(200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및 정서 기능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희준(2004).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교육관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표옥자(1996). 유아 기본 생활 습관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양육태도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중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중혜, 홍계옥(2000). 어머니의 자기 지각과 양육행동 - 유치원아 어머니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1), 85 -111
- 황성기(1994). 아동의 인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정유, 최영희(2008). 어머니의 놀이신념 및 양육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4), 77-90
- Baumrind, D.(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1), 43-88.
- Bayley & Schaefer(1967). *Maternal behavior and personality development*, In G. R. Medinnus(ed.). *Readings in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 N. Y.:John Wiley & Sons, Inc.
- Becker, W. C.(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Vol. 1*, New York : Russell Sage. pp. 169- 208.
- Becker, W. C.(1967). *Consequences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 In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M. L., Balsky
- Fishbein, M. S.(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Mussen P. H, Conger J. J, Kagan (196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ed 3.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287-445,
- Roe, A. & Siegelman, M.(1963). A parent-child relations questionnaire. *Child Development*, 34(2), 1963, 355-369.
- Schaefer, E. S.(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ymonds, P. M.(1949). *The Learning theory of child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116

< 참고인터넷 사이트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 <http://www.unicef.or.kr>

한국아동권리학회 : <http://www.kccr.or.kr>

한국인권재단 : <http://www.humanrights.or.kr>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by Mothers and Child-Rearing Styles

Ahn, Sarah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cognize some difference about mothers who have age 1 to 5 children living under different demographic and social economic conditions were studied for their child-rearing styles and their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also, it is designed to promote and to provide children's rights by basic data. The following questions were asked as study objectives:

1. How does mother think about children's rights?
2. What type of child-rearing style does the mother have?
3. What does mother's thinking about children's rights effect on child-rearing styles?

Surveys were distributed to 270 mothers with children between ages of 1 to 5 who are currently enrolled in early childhood academic centers in Seoul, and 296 surveys were completed and returned. Of 296 surveys returned, 26 surveys were deemed incomplete and a total of 270 survey results were used for this study. Surveys began in December 19, 2011, and ended in January 13, 2012.

Based on statements written by Hart and Zeider (1993), and a survey report developed, Sora Lee modified and used for researching in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by Children, Parents and Teachers” (1998). Schaefer’s MRBI, adapted by Won Young Lee (1983) and restructured by Ok Ja Pyo (1996) and Eun Kyung Choi (2009), were used to study the mother’s child-rearing styles.

Collected survey data was analyzed for frequency, distribution,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using One Way ANOVA, Duncan’s Multiple-Comparison-Verified, and Pearson’s Ever Rate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egression Analysis per questions asked.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mothers with children between ages of 1 to 5 rated the awareness of children’s right as very important, and mothers were most aware of the right to live as a part of children’s rights. This awareness did not have any correlation with the age or the level of education of the mother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Moreover, the level of awareness had no correlation with employment, household income, sex, or age of the children.

Secondly, indulgent parenting ranked the highest based on the survey results and authoritative parenting was ranked the last. Mothers who were younger than 30 had the highest number of people practicing indulgent parenting. Mothers with a higher level of education showed indulgent/freeranger parenting style, while on the other hand, mothers with a lower level of education showed authoritative and unyielding. Child-rearing style also correlated with the level of income, the higher the household income, the more liberal and permissive mothers are. However, child-rearing style did not have any correlation with sex or age of the children.

Lastly, there is an interrelationship between a mother's recognition of a child's right and the mother's attitude of fostering the child. Specially, the whole of the right of the child and autonomous attitude had a static interrelation, and a subsidiary interrelation was visible in the control.

On the mother's recognition of a child's right, custody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subordinately affected refusal attitude in fostering attitude of the mother. In addition, the development rights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an autonomous attitude was shown that the positive effect, and control attitude gave a negative impact on, also, the right to participate subordinately affected control attitude.

VI. 부록

<부록1> 아동권리에 대한 부모의 인식 측정도구	78
<부록2> 어머니의 양육태도 측정도구	81
<부록3> 어머니의 배경변인	83
<부록4> ‘아동권리협약’의 조항별 색인	84

<부록1> 아동권리에 대한 부모의 인식 측정도구

◆ 어머니께서는 아래에 나오는 권리들이 아동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0)표 해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중요 하다	아주 중요 하다
1	어쩔 줄 모를 때나 기분이 나쁠 때 성인의 도움을 받는 것	1	2	3	4	5
2	부모 모두와 함께 살면서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1	2	3	4	5
3	아동을 보살펴 주고 필요하면 아동의 입장을 말해 줄 사람이 있는 것	1	2	3	4	5
4	사람들이 아동을 나쁘게 생각하더라도 아동을 공평하게 대접해 주는 것	1	2	3	4	5
5	다른 사람과 잘 사귀는 것	1	2	3	4	5
6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1	2	3	4	5
7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	1	2	3	4	5
8	아동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 아동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것	1	2	3	4	5
9	의식주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	1	2	3	4	5
10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것	1	2	3	4	5
11	아동의 종교, 언어, 피부색, 신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2	3	4	5
12	아동과 관련된 계획이나 일을 할 때 아동의 입장이나 희망사항이 존중되는 것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중요 하다	아주 중요 하다
13	아동을 좋아하는 좋은 친구들을 사귄 기회를 갖는 것	1	2	3	4	5
14	놀이를 즐기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1	2	3	4	5
15	스스로 마음먹은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	1	2	3	4	5
16	다른 사람의 종교, 언어, 피부색, 사회적 신분을 존중할 줄 아는 것	1	2	3	4	5
17	아동이 가진 모든 능력과 자질을 계발하는 것	1	2	3	4	5
18	전쟁, 화재, 지진, 홍수, 기아 등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즉시 도움을 받는 것	1	2	3	4	5
19	아동의 능력과 노력이 허락하는 한 최고의 좋은 교육을 받는 것	1	2	3	4	5
20	누구나 생명을 누리며 살 권리가 있는 것	1	2	3	4	5
21	남의 눈치를 볼 필요 없는 아동만의 장소와 시간을 갖는 것	1	2	3	4	5
22	어른이 되기 전까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1	2	3	4	5
23	마음껏 쓸 만큼의 돈이 있는 것	1	2	3	4	5
24	아동의 나이에 걸맞은 행동을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권리	1	2	3	4	5
25	아동을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1	2	3	4	5
26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울 기회를 갖는 것	1	2	3	4	5
27	아동 방식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존중 받는 것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보통 이다	조금 중요 하다	아주 중요 하다
28	아동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	1	2	3	4	5
29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존중해주는 아동만의 생각, 의견을 갖는 것	1	2	3	4	5
30	아동의 권리를 책임 있는 사람이 존중해 주는 것	1	2	3	4	5
31	아동이 잘되기를 바라는 어른의 관심과 지도를 받는 것	1	2	3	4	5
32	위험하거나 아동의 나이에 걸맞지 않는 노동을 하지 않는 것	1	2	3	4	5
33	나이가 들면서 책임이 많고 무거워진다는 것을 아는 것	1	2	3	4	5
34	아동의 감정을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 받는 것	1	2	3	4	5
35	공부 할 장소를 갖는 것	1	2	3	4	5
36	때가 되어 아동이 원하면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것	1	2	3	4	5
37	아동과 다른 사람의 삶을 좋게 만드는 일은 하는 것	1	2	3	4	5
38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갖는 것	1	2	3	4	5
39	아동이 배우기 위해서 바라는 만큼의 도움을 얻는 것	1	2	3	4	5
40	아동의 몸을 해칠 사람이나 상황으로부터 보호 받는 것	1	2	3	4	5

<부록2> 어머니의 양육태도 측정도구

◆ 다음 문항들을 읽으신 후 자녀양육에 관한 어머니의 평소생각이나 행동과 가장 일치하는 번호에 (0)표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어머니께서는.....					
1	자녀가 버릇없이 굴 때 어머니께서는 벌을 주겠다고 엄포 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2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려면 부모를 어렵게 알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3	자녀가 스스로 할 일을 찾아서 하게 하는 편이십니까?	1	2	3	4	5
4	자녀 마음대로 행동하게끔 자유를 줄 생각이 있습니까?	1	2	3	4	5
5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해 독서도 하고 강연회 등에 참석하여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십니까?	1	2	3	4	5
6	자녀에게 애정표현을 겉으로 잘하십니까?	1	2	3	4	5
7	자녀의 행동이 자랑스럽게 느껴져 칭찬을 잘하는 편이십니까?	1	2	3	4	5
8	자녀가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갖도록 격려해 준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9	자녀가 흥미를 갖고 있는 취미에 어머니께서도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	2	3	4	5
10	자녀가 하는 일을 감시하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11	자녀가 주장하는 것을 다 들어주며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12	자녀가 클 때까지 다른 사람이 좀 키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1	2	3	4	5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어머니께서는.....					
13	귀하는 자녀 양육이외에도 중요한 일이 있으십니까?	1	2	3	4	5
14	자녀의 정서적 특성이나 성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15	어머니께서는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고집어내지 않는 편이십니까?	1	2	3	4	5
16	주부나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보람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1	2	3	4	5
17	자녀행동 때문에 속상하고 화난다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1	2	3	4	5
18	자녀들이 장손, 맏딸 등 집안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도록 칭찬하시는 편이십니까?	1	2	3	4	5
19	자녀가 어머니께서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만 칭찬하시는 편이십니까?	1	2	3	4	5
20	남편에 대해서 존경심과 긍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1	2	3	4	5
21	남편과 함께 직업, 생각, 여가선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편이십니까?	1	2	3	4	5
22	자녀를 키우다보면 즐거울 때보다 짐스러운 때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23	자녀의 행동이나 성취한 일(그림, 만들기 등)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1	2	3	4	5
24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냉정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부록4> '아동권리협약'의 조항별 색인

구성	조항	내용
제 1부 실질적 규정	제1조	아동의 정의
	제2조	차별의 금지
	제3조	아동 최선의 이익 고려
	제4조	당사국의 협약 이행 노력
	제5조	부모 등의 책임 존중
	제6조	생명권
	제7조	성명 및 국가권
	제8조	신분 보존권
	제9조	부모로부터의 분리 제한
	제10조	가족 재결합을 위한 출입국보장
	제11조	아동의 국외 불법 이송 퇴치
	제12조	아동의 의사표현권
	제13조	의사표현의 자유
	제14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15조	결사·집회의 자유
	제16조	사생활 보호의 자유
	제17조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
	제18조	부모의 양육책임
	제19조	폭력·학대·착취 등으로부터의 보호
	제20조	결혼 아동의 특별보호
	제21조	입양제도
	제22조	난민 아동의 보호
	제23조	장애 아동의 보호
	제24조	건강 및 의료지원
	제25조	양육지정 아동에 대한 권리
	제26조	사회보장권
	제27조	적정생활수준 향유권

	제28조	교육권
	제29조	교육의 목표
	제30조	소수자·원주민 아동의 보호
	제31조	휴식·여가 및 문화 활동의 참여
	제32조	노동 착취 방지 및 보호
	제33조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로부터의 보호
	제34조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제35조	아동의 약취, 유괴, 유인, 매매, 거래 금지
	제36조	기타 형태의 착취 금지
	제37조	아동에 대한 고문, 사형 등 일체의 가혹 행위 금지
	제38조	무력분쟁시의 아동보호
	제39조	피해 아동의 사회복지 지원
	제40조	아동보호를 위한 사법적 절차와 준수사항
	제41조	협약과 상치되지 않는 국내·국제법의 존중
제2부 이행	제42조	‘협약’의 고지 의무
	제43조	설립과 구성, 위원장과 위원의 선출, 임기, 수행기능
	제44조	당사국의 국가보고 의무
	제45조	‘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제 3부 부칙	제46조	‘협약’의 서명 개방
	제47조	‘협약’의 당사국 비준 및 비준서 기탁
	제48조	‘협약’의 국가가입 개방
	제49조	‘협약’의 효력 발생
	제50조	‘협약’의 개정 절차
	제51조	‘협약’의 유보 조항 절차
	제52조	‘협약’의 폐기 절차
	제53조	‘협약’의 수탁자
	제54조	‘협약’ 문서 언어 규정